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79

발의연월일: 2024. 11. 14.

발 의 자:김우영·송재봉·황명선

양문석 • 정동영 • 김남희

김문수 · 김 윤 · 박민규

이강일 · 최기상 · 이재강

김영환 · 윤종군 · 염태영

김남근 · 오세희 의워

(179])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시청자인 국민이 공영방송 KBS에 납부하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운영·유지를 위해 부과하는 '특별 부담금'이기 때문에 일반 조세와 동일시할 수 없고, 유료방송 시청료 납부와는 이중부담이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아울러 수신료 부과 목적, 부과 대상, 부과 기준에 있어서 조세나 서비스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구분된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런데도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인상, 수신료 산정 및 배분, 수신료 고지 및 징수 방법 등에 관한 문제는 수신료 자체의 목 적성, 필요성, 적정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판단 차원에서 논의되기보다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정치적 논란에만 매몰되어 수신료 논

의의 본질이 왜곡당하는 수난을 겪고 있음.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법인 방송법이 아닌 방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의적으로 수신료 분리 고지를 하도록 강행하여 공영방 송 KBS뿐만 아니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음.

이에 각 지역별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독립된 공영방송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여기에서 수신료의 인상·인하의 필요성 여 부에 대한 판단, 객관적인 수신료 산정 및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게 하 여 수신료 징수 및 사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원활한 수신료 징수를 통한 효율적 운용과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현행 방송법시행령 상 규정하는 수신료 고지· 징수와 관련하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도록 법에서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가.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증액 또는 감액은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가 결정하여 국회 본회의 승인으로 확정하도록 함(안 제65조).
- 나. 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공영방송 KBS의 재원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신료의 합리적 산정과 수신료의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이하 "수

신료위원회"라 함)를 설치함(안 제65조의2).

- 다. 수신료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21명으로 구성하고, 수신료위원은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분야의 대표성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회(이하"광역의회"라 함)의 동의를 받아 각 광역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국회의장이 위촉함. 다만, 각 광역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의수는 광역의회별 유권자 수, 의원 수 등을 고려하여 국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5조의3 신설).
- 라. 수신료위원의 직무상의 독립과 신분보장, 수신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사무조직 설치 등에 관해 규정(안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7까 지 신설).
- 마. 수신료 징수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도록 함(안 제67조제3항신설).
- 바. 수신료의 배분에 대해 수신료 중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수 신료위원회가 정하는 배분기준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 로 배분하도록 함(안 제68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5조(수신료의 조정 신청 및 결정)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65조의2에 의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에 현행 수신료 증액 또는 감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65조의2에 의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신료의 증액 또는 감액을 결정하여 국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신료 조정 신청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국회의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날 이후 최초로 개회되는 본회의에 해당 보고안건을 상정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 및 의결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수신료는 공사가 부과하고 징수한다.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5조의2(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의 설치) 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공영방송의 재원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신료의 합리적 산정과 수신료의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 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이하 "수신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5조의3(수신료위원회의 구성 등) ① 수신료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21명 이내의 비상임 위원(이하 "수신료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수신료위원은 공영방송의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회(이하 "광역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각 광역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국회의장이 위촉한다.
 - 1. 회계 또는 감사관련 기관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 2. 방송관련 투자 및 경영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 3.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 4. 방송업계 또는 방송관련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 5. 방송, 법률, 행정, 경영, 회계, 기술 관련 학과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하였던 자
 - 6. 시청자단체 또는 방송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거나 하였던 자
 - 7. 기타 수신료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활

동하였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③ 제2항에 따라 각 광역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의 수는 광역의 회별 유권자 수, 의원 수 등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169조에 따른 국회의 규칙(이하 "국회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④ 수신료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수신료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수신료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추천자의 추천을 받아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7)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신료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및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으로서 탈당한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후 2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 거나 재직중인 사람
- 8.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 회 위원과 같은 법 제9조의 전문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⑧ 그 밖에 수신료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65조의4(수신료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수신료위원은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② 수신료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제65조의3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4.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제65조의5(수신료위원회의 업무 등) ① 수신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65조제1항에 따른 수신료 조정 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
 - 2. 수신료 산정 및 수신료 배분안에 대한 심의 · 의결

- 3. 수신료 배분기준에 대한 심의 · 의결
- 4. 수신료의 산정 및 배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및 과제 수행에 대한 결정
- 5. 수신료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수신료 조사기구의 구성
- 6. 그 밖에 수신료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수신료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구받은 해당 방송사업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수신료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전문가로 구성된 조사기구를 둘 수 있다.
- ④ 수신료위원회는 업무수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의장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다.
- 제65조의6(수신료위원회의 운영 등) ① 수신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수신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신료의 조정결정과 산정 및 배분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 ④ 수신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⑤ 수신료위원회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⑥ 수신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과 관련한 필요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⑦ 수신료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비용은 「국회법」 제23조 에 따라 편성한다.
- 제65조의7(사무조직) ① 수신료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조직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6조의2(수신료 징수권 및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① 수상기소지자에 대한 공사의 수신료 징수권은 최초 수신료 납부 통지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② 수신료의 과오납(過誤納)으로 인하여 생긴 수신료 납부자의 공사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환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③ 수신료 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 제6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 다만 공사와 지정받은 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68조 중 "公社는"을 "수신료위원회는"으로, "受信料를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수신료 중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수신 료위원회가 정하는 수신료 배분기준에 따라"로, "지원할 수 있다"를 "배분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第65條(受信料의 決定) 受信料의 금액은 理事會가 審議・議決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國會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公社가 이를 賦課・徵收한다.

개 정 안

제65조(수신료의 조정 신청 및 결정)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제65조의2에 의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에 현행수신료의 증액 또는 감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65조의2에 의한 공영방송 수신료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 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에 수신료의 증액 또는 감액을 결정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신료 조정 신청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의견 을 제시할 수 있다.
- ① 국회의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날 이후 최초로 개회되 는 본회의에 해당 보고안건을 상정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 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 및 의결 일정을

<신 설>

조정할 수 있다.

<u>⑤</u> 수신료는 공사가 부과하고 징수한다.

제65조의2(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의 설치) 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공영방송의 재원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신료의 합리적 산정과 수신료의 합리적 산정과 수신료의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이하 "수신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5조의3(수신료위원회의 구성 등) ① 수신료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21명 이내의 비상임 위원 (이하 "수신료위원"이라 한다) 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수신료위원은 공영방송의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 야의 대표성 및 성별 등을 고 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 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의회(이하 "광역

-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각 광역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국회의장이 위촉한다.
- 회계 또는 감사관련 기관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하였던
 <u>자</u>
- 2. 방송관련 투자 및 경영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 3.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하였던<u>자</u>
- 4. 방송업계 또는 방송관련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u>자</u>
- 5. 방송, 법률, 행정, 경영, 회계, 기술 관련 학과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하였던 자
- 6. 시청자단체 또는 방송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거나 하였던 자
- 7. 기타 수신료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관련분야에서 10년 이 상 활동하였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③ 제2항에 따라 각 광역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의 수는 광역의회별 유권자 수, 의원 수등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1 69조에 따른 국회의 규칙(이하 "국회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④ 수신료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수신료위원회가 미 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 를 대행한다.
- ⑥ 수신료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추천자의 추천을 받아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한다.
-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신료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및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견인
-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으로서 탈당한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
-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 람
-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 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사람
- 8.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과 같은 법제9조의 전문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 ⑧ 그 밖에 수신료위원회의 구

<u><신</u> 설>

 성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

 다.

제65조의4(수신료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수신료위 원은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 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 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② 수신료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제65조의3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 상의 형을 받은 경우
- 4.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오

제65조의5(수신료위원회의 업무 등) ① 수신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5조제1항에 따른 수신료

 조정 신청에 대한 심의·의결

 2. 수신료 산정 및 수신료 배분

안에 대한 심의 · 의결

- 3. 수신료 배분기준에 대한 심 의·의결
- 4. 수신료의 산정 및 배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및 과제 수행에 대한 결정
- 5. 수신료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수신료 조사기구의 구성
- 6. 그 밖에 수신료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수신료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구받은 해당 방송사업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수신료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기구 를 둘 수 있다.
- ④ 수신료위원회는 업무수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의장에게 제출·보고하여야한다. 이 경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다.

- 제65조의6(수신료위원회의 운영 등) ① 수신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 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 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수신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신료의 조정 결정과 산정 및 배분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 <u>④</u> 수신료위원회의 회의는 공 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⑤ 수신료위원회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6 수신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과 관련한 필요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⑦ 수신료위원회의 운영과 활

<신 설>

동에 관한 비용은 「국회법」 제23조에 따라 편성한다.

제65조의7(사무조직) ① 수신료위 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 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 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6조의2(수신료 징수권 및 환 급청구권 소멸시효) ① 수상기 소지자에 대한 공사의 수신료 징수권은 최초 수신료 납부 통 지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 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한다.

② 수신료의 과오남(過誤納)으로 인하여 생긴 수신료 납부자의 공사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환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수신료 징수권과 환급청구 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 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第67條(수상기 登錄 및 徴收의 委託) ①・②(생 략) <<u>신 설></u>

③ (생략)

第68條(受信料의 사용) <u>公社는</u> 第 제68조(受信料의 사용) <u>수신료위</u> 65條 및 第66條에 따라 徵收된 <u>원회는</u>-----<u>수신료 중</u> <u>바에 따라</u> 韓國敎育放送公社法 <u>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u> 에 의한 韓國敎育放送公社의 <u>부신료위원회가 정하는 수신료</u> 財源으로 지원할 수 있다. 배분기준에 따라-----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 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 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 를 행한다. 다만 공사와 지정받 은 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 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원회는---------수신료 중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수신료위원회가 정하는 수신료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